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함(안 제2조).
-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
-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계정 등록 거절사유 신설,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중개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지급하는 절차와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3 및 제41조).

II. 검토의견

1. 배출권의 할당 관련(안 제12조)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에서는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이러한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며(제2항),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항)

그런데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배출권 할당에 있어 “할당대상업체”를 기준으로 하던 할당 방식을 “할당대상”으로 변경하여 업체가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할당대상”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각 업종별(ex. 철강, 석유화학 등) 배출권 할당 기준이 다양하여 관련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할당대상”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문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생략)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② -----	② -----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u>할당대상업체의 무역 집약도 및 탄소집약도</u>	----- ----- -----. 4. <u>할당대상의</u>----- -----	----- ----- -----. 4. <u>할당대상(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u>-----
---	--	---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관련(안 제22조의3제11항)

안 제22조의3제11항에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등에 관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9항1)과 유사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2)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는 “시장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어를 대체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투자자”는 이 법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주체인 “시장 참여자³⁾”로 명칭을 변경한 수정의견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 ----- ----- ----- ----- -----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 및 제383조제1항·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u>투자자정보</u>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u>투자자정보</u>의 분리 보관 4. <u>투자자정보</u>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u>투자자정보</u>의 삭제 6. 그 밖에 <u>투자자정보</u>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1.----- 2. <u>시장 참여자 정보</u>----- 3. <u>시장 참여자 정보</u>----- 4. <u>시장 참여자 정보</u>----- 5. -----<u>시장 참여자 정보</u>--- 6. -----<u>시장 참여자 정보</u>----- -----
---	--

(전문위원 이 은 정)